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 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6건의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례 개정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계리	회계처리	기장	기록	계기	규정
깍연	흡연	사력	자갈	부락	마을
주서	붉은 글자				

- 나. 「구미시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외 9건의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기획실	경제기획국	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행정민원과
경제통상국	경제기획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	도시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관광		총무과	환경안전과	환경보전과
	건설도시국	투자통상과	기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	유통과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관광국	과학경제과	신산업정책과장	기술개발과	유통과
건설도시국	도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국	담당국
농업기술센터	선산출장소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실·과	담당관·과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 법령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어려운 한자어 정비

제1조(「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설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계리하여”를 “회계처리하여”로,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
하여야”로 한다.

제2조(「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구미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구미시공영개발
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 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한다.

제4조(「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개정) 구미시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계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5조(「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
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6조(「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계리상황의 보고)”를“(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한다.

제7조(「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계리상황의 보고)”를“(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한다.

제2장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제8조(「구미시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의 개정) 구미시오성 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미시경제기획국장”을 “구미시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9조(「구미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0조(「구미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국장

제11조(「구미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2조(「구미시 공인조례」의 개정) 구미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본청, 출장소의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봉사과장이”를 “민원실 전용공인은 본청은 민원봉사과장이 출장소는 행정민원과장이,”로 한다.

제13조(「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기술개발과”를 “유통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선산출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통담당 공무원

제14조(「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5조(「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16조(「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

제17조(「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 7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나.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다.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제외)			
1)	대장문서	1통	300	
2)	토지도면	1통	300	
3)	건물도면	1통	300	
나.	공부열람(지적관계 제외)			
1)	기본료	시간당	100	
2)	초과료	10분당	100	
다.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건	400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바.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 1,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건	800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7. 지가관련 확인원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	1건	5,000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나.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다.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마.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법인 30,000 개인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3)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2. 농수산 관계			
가. 내수면 어업 관계			
1)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6)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8)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9)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10)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11)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1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1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1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15)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16)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1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	
1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	
1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2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22)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23)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나.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다.	농정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라.	축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2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다.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라.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마.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 판매소) 신고	1건	10,000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파.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4. 건설 관계				
가.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나.	<삭제>			
다.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석,자갈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마.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바.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사.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아.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1,000	
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차.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카.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5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파.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거.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너.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러.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5. 문화·예술 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	전국적통일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건	20,000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차.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카.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파.	영화업 신고	1건	20,000	
하.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거.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너.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더.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	
러.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	
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6. 보건소 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체육시설 관계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9. 그 밖에 각종 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 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으로서 관련 법령이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 안전부 고시)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	1건	500	

【별지 2】

■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7조 관련)

1.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환경보전과】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제출한 구매 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집계 이행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환경보전과**로 제출
-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환경보전과**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 계획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별지 3】

■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우 편 엽 서

구미우체국

보내는사람

요금별납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 미 시 장

39281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통지

○ 관리번호 :

○ 청소기한:

○ 발 송 일:

받는사람

뒷면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통지서

1.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사용관리하시는 정화조의 내부청소기한은 앞면에 표기된 기한까지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정화조 내부청소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시청 **환경보전과**(☎480-5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452-3000 · 452-8900 · 452-0022 · 481-2662

♣ 단독정화조의 적기청소는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시민실천운동입니다.

구 미 시 장

【별지 4】

■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 [별표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 간사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법인대표(또는 공판장장)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교수, 시의원, 유통관련전문가, 중도매인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5. 10. 30)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5】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시 청사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안전재난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실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정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신산업정책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보전과 상하수도사업소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대중교통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지 6】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4+α명	
	반 장	재난업무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α) － 재난상황근무자(1+α)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 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신산업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1+α+β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10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α) - 재난상황근무자(1+α)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신산업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7+ α + β 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16+ α 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관 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상황관리반(3+ α) － 재난상황근무자(2+ α)
		나) 상황보고서 작 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 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신산업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구미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4+α명	
	반 장	재난업무 담당	
	1) 상황 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α) － 재난상황근무자(1+α)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 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신산업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 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구미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1+α+β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 상황관리총괄반 (10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α) - 재난상황근무자(1+α)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 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신산업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 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 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7+α+β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16+α 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관 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상황관리반(3+α) － 재난상황근무자(2+α)
		나) 상황보고서 작 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 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신산업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 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 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지 7】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8+α+β+γ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1) 재난상황 총괄반 (7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과약팀(4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신산업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 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구미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50사단, 구미경찰서, 부산지방국토관 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 한국 전력공사대구경북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 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 재난대응협업반 ·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회계원칙 등)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u>계리하여</u>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 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 계기준에 의하여 <u>계리하여야</u> 하 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3조(회계원칙 등) ----- ----- <u>회계처리하여</u> ----- ----- ----- ----- <u>회계처리하여야</u> --- -----.

□ 구미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출자) ① (생략)	제10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한다</u> .	②----- ----- ----- ----- 회계처리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u>계리 상황의 보고</u>)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u>계리상황</u> 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u>회계처리 상황의 보고</u>) -- ----- ---- <u>회계처리 상황</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법 제5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물리자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 <u>부락</u>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 ----- ----- ----- ----- <u>마을</u> ----- ----- -----.
제19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 ----- ----- ----- ----- ----- ----- ----- -----.
1. 법 제5조의 각 호에 <u>계기</u> 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1. ----- <u>규정</u>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회계 및 결산) ①·② (생략) ③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로 <u>계리</u>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조(회계 및 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회계처리</u> -----. ④ (현행과 같음)

□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출자) ① (생략)	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한다.</u>	② ----- ----- ----- ----- <u>회계처리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u>계리상황의 보고</u>)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u>계리상황</u> 을 시장에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지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u>회계처리 상황의 보고</u>) -- ----- ----- <u>회계처리 상황</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출자) ① (생략)	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u>계리한다</u> .	②----- ----- ----- ----- ----- 회계처리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u>계리상황의 보고</u>)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u>계리상황</u> 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u>회계처리 상황의 보고</u>) -- ----- ----- <u>회계처리 상황</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 등) ① (생략)	제5조(임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구미시의회 부의장, 구미교육청학무과장, 구미문화원장, 구미시체육회실무부회장, 예총구미시지부장, <u>구미시경제기획국장</u> 으로 하며, 그 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 ----- ----- ----- <u>구미시 담당국장</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u>행정안전국장</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④· ⑤ (생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문화체육관광국장</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u>1. 경제통상국장</u> 2.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1. 문화체육관광국장</u> 2. (현행과 같음)

□ 구미시 공인조례

[illegible]

□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쇼핑몰 운영) ① (생략)	제4조(쇼핑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는 <u>기술개발과</u> 에서 한다.	② ----- ----- ----- ----- ----- ----- ----- ----- <u>유통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u>농업기술센터소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u>선산출장소장</u> -----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1. <u>농촌지원 및 기술개발 담당 공무원</u>	1. <u>유통담당 공무원</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u>소장</u> 2. ~ 11. (생략) ③ 위원장은 <u>소장</u> 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국장</u> 2. ~ 11. (현행과 같음) ③ ----- <u>국장</u>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계리	회계처리	기장	기록	부락	마을
깍연	흡연	사력	자갈	계기하다	규정하다
주서	붉은 글자	계기	규정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경제기획국에 두는 과) ① 경제기획국에 기획예산과,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및 일자리경제과를 둔다.

② 경제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2.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3.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공포 및 소송업무
5. 시의회 운영 지원
6. 규제개혁 및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7. 신산업정책 및 종합전략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
9. 구미전자정보기술단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업지원 및 기업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업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6.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7.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및 전국체전추진단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사항
4. 관광정책 수립, 추진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6.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교육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위생과, 종합허가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복지 업무
5.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9.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관련 종합기획
2.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관련 종합업무
3. 취업박람회 운영
4.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전반 및 기타 업무 연계 사항
6. 청년 지역사회발전 참여 사항
7. 지역경제 분석 및 동향관리
8. 경제통계 및 지표관리
9. 지역금융동향 분석 및 금융기관 관리
10. 물가조사·동향 및 안정대책 추진
11. 방문·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4. 계량기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5.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사항
16.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
17.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지역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

제34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2. 제증명 발급
3.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업 지도감독
5. 민원처리 검열에 관한 사항
6. 민원실운영에 관한 사항
7. 고객만족도 향상 시책 개발 및 운영
8.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9. 생활민원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
11. 수형인명표 관리
12.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3. 문서수발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4.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36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2. 도시기반시설 계획·정비
3.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업무에 관한 사항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관한 사항
9.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 온천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기준점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 위탁보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1조(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계획 수립 추진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4. 녹색성장정책 총괄·조정
5. 녹색성장업무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6. 기후변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 및 오염도측정
8. 환경오염사고 대응 관리

9. 대기환경보전 및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사항
10. 악취발생 및 사업장관리에 관한 사항
11. 빛 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1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분뇨관련영업자 등록 및 지도점검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0.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1.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생태교란 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3.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보급 지원사업
24.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25. 악취방지시책 수립 및 추진
26.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2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9.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제53조(유통과) 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산물 가공,처리,유통 및 시장개척
3.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공급 등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5.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
6. 지역푸드플랜구축사업
7.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
8. 농산물 직거래 및 박람회 홍보
9.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지도 감독
10. 농산물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
11. 농업융복합 산업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중 유통관련 업무
12. 지역생산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13. 특산브랜드 개발 및 홍보
14. 그 밖에 농식품 유통 등에 관한 사항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일
	담 당	민 영 미
	담 당 자	김 효 미 (480-6523)